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083 호】

2014년 06월 17일 (화)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26호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170호	도로명주소 고시	11
고양시 고시 제2014-171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14
고양시 고시 제2014-172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17
고양시 고시 제2014-173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19
고양시 고시 제2014-175호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수를 확대하여 안전 유형별 또는 접수량에 따라 필요시 적정위원을 소위원회로 구성, 신속한 운영을 통한 심의지연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며,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규제관련 안전심의 시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골자

- 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 위원 불참과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위원회 개최 지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급을 요하는 안전은 필요시 현장 회의를 병행하는 등 위원 구성수를 확대(기존12명 ⇒ 변경20명)하여 심의지연을 사전에 방지, 비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개선·보완코자 함.
(안 제3조제1항)

- 나. 안전 수요가 많은 분야는 적정위원을 선정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위원구성 및 운영규정 추가 신설.
(안 제6조의2제1,2,3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7월 8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정책기획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031-8075-207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민생경제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풍부한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7일 전”을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공익등”을 “공익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본부)”를 “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표자등”을 “대표자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간사1인”을 “간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2.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에서 발굴된 규제에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 및 처리 방안 등

3.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 제목“(규제신고센터의 설치)”를“(규제신고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규제신고센터”를 “규제신고센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범위에서 수당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담당관 성명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팀장 성명	규제개혁T/F팀 이홍연
	담당자 성명·전화	전효창 (8075-207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행정
			-----	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양
			-----	시규제개혁위원회-----
			-----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제2조(기능)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민생경제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현행	개정안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u>있었던 자</u>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u>있는자</u>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u>있었던 자</u> 4. <u>4급이상</u>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u>있었던 자</u> 5. <u>기타</u>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u>풍부한자</u> ⑤ <u>위원중</u>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u>부의사항</u>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u>7일전까지</u>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u>공익등</u>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u>국(본부)·소장(담당관, 과장 포함)</u>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u>대표자등</u>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 ----- ----- <u>있었던 사람</u> 2. ----- <u>있는 사람</u> 3. ----- ----- <u>있었던 사람</u> 4. <u>4급 이상</u> ----- ----- <u>있었던 사람</u> 5. <u>그 밖의</u> ----- <u>풍부한 사람</u> ⑤ <u>위원 중</u> ----- ----- ----- <u>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5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회의에 부치는 사항</u>----- ----- <u>7일 전</u>----- -----. ④ -----. <u>공익 등</u> ----- ----- -----. ⑤ ----- <u>국</u> ----- ----- -----. ⑥ ----- ----- <u>대표자 등</u>----- -----.

현행	개정안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간사1인</u> 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u>담당관·과장</u> 이 된다.	제6조(간사) ① ----- ----- <u>간사 1명</u> -----. ② ----- <u>장</u> -----.
<신설>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u>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③ <u>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2. <u>규제개혁신고센터 등에서 발굴된 규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 및 처리방안 등</u> 3. <u>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u>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제7조(<u>규제신고센터의 설치</u>)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u>규제신고센터</u> 를 둔다.	제7조(<u>규제신고센터의 설치</u>) ----- ----- ----- <u>규제신고센터</u> -----.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u>안에서</u>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 등) ----- ----- ----- <u>에서 수당 등</u> ----- -----. -----.

관계법령발췌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준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양시 고시 제2014 - 17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17.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 외 2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6.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4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	20090911	화정-행신간 도로로 한 자씩을 활용하 여 도로명 부여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4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숭발2길 7-12	20120601	소나무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도 로명 부여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67, 475-95, 2-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32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서오릉관리사무소 및 역사문화관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63-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355-1	20000727	서삼릉의 능호를 도로명에 적용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6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341-1	20000727	서삼릉의 능호를 도로명에 적용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50-7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05번안길 30	20100126	삼송로205번길 안쪽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5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9	20120601	동산동과 세수리마을에서 한자씩을 활 용하여 도로명 부여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54-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1 길 23-8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54-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1 길 23-18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160-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86 번길 100-14	20100126	대덕로 시점에서 860m에 위치한 도로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40-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101번길 1-15	20100126	대덕로 시점에서 1010m에 위치한 도로	
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 산동 1188-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41번길 51-23	20100126	일산로 시점에서 4410m에 위치한 도로	
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97-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 을1로48번길 54-1	20100126	숲속마을1로 시점에서 480m에 위치한 도로	

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 동 18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 로 237	20081010	옛 대통령 사저 앞을 지나는 도로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 동 642-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맥절길 302-23	20090911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 동 235-5, 234-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45번길 160-16	20100126	동국로 시점에서 2450m에 위치한 도로	
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 동 73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51-1	20090911	동국대병원을 지나는 도로로 지명을 도 로명에 적용	
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 동 21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531번길 20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5310m에 위치한 도로	
1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 동 21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531번길 18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5310m에 위치한 도로	
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 동 99-25, 100-5, 99-32, 99-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 로 318	20100126	건달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 동 446-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78	20090911	탄현-중산간 도로로 한 자씩을 활용하 여 도로명 부여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 동 98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백 송길 65-17	20100126	천연기념물 송포백송을 도로명에 적용	
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 동 983-1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백 송길 65-15	20100126	천연기념물 송포백송을 도로명에 적용	
2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 동 9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백 송길 65-13	20100126	천연기념물 송포백송을 도로명에 적용	
2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 동 1179-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291-21	20081010	범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 월 17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84-19 외 3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6.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14-1, 814-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72번길 4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72번길 48	2014.6.17.	건물번호분할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14-1, 814-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72번길 4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72번길 46	2014.6.17.	건물번호분할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80, 3-1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1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84-19	-	관련지번 착오 기재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80, 3-1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8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84-20	-	관련지번 착오 기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7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78 외 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6.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별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78	2014.6.17.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7.29.	덕이동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101번길 1-21	2014.6.17.	건물멸실	2011.7.29.	현천동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101번길 1-25	2014.6.17.	건물멸실	2011.7.29.	현천동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205번안길 30	2014.6.17.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7.29.	삼송동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 월 17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6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8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5	2014.6.17.	건물번호 착오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6.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고시 제2014-175호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일산동구 문봉동 58-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54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반영된 사항을 동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 6. 17.
고 양 시 장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 설 명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광장 54호	교차로		3,815	문봉동 58-6번지 일원		고양시고시 제214호 2007.03.12.
변경	광장 54호	교차로		3,910	문봉동 58-6번지 일원		

- ☒ 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시설명	변경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기정) 교통광장 54호	(변경) 교통광장 54호	(기정) ◦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58-6번지 일원 ◦ 면적: 3,815.0㎡ ◦ 시설: 교통광장	◦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광장의 구조 및 기능개선을 위한 면적 증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에 반영된 사항을 동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결정을 하고자 함
		(변경) ◦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58-6번지 일원 ◦ 면적: 3,910.0㎡ ◦ 시설: 교통광장	

- ☐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